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창업교육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사제도 구성) 창업교육 학사제도는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교과), 창업학점 교류제로 구성한다.

제 2 장 전담조직 및 위원회

제3조(전담조직) 대학의 창업지원, 창업관련 관리는 ‘디아코니아인재개발센터’에서, 학사제도 운영 및 관리는 교학처에서 한다. (2020.10.6.개정)

제4조(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 ① 창업교육학사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디아코니아인재개발센터 내에 둔다. (2020.10.6.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학처장, 산학협력단장, 디아코니아인재개발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2020.10.6.개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창업휴학, 창업실습(창업동아리활동) 인정 등에 관한 사항
2. 창업강좌의 개설 및 교과목 수강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창업교육 학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제 3 장 창업휴학제

제5조(창업휴학) ① 창업휴학의 경우 일반휴학과 별도로 1회에 1년까지 가능하며, 1회 연장(최대 2년) 가능하다. 단, 1회 연장 신청시에는 1년간의 창업활동실적, 향후 사업추진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창업휴학은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며, 매 학기별로 별도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디아코니아인재개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창

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개업일로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으로 한다. (2020.10.6.개정)

- ③ 창업휴학의 승인은 서류심사와 현장방문평가를 동시에 실시한 후 결정한다.
- ④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한다. 단,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휴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 ⑤ 창업휴학이 인정된 경우 디아코니아인재개발센터에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학처에 관련 학생의 창업 휴학을 의뢰하여야 하며, 교학처에서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휴학을 처리한다. (2020.10.6.개정)

제6조(창업휴학 자격요건) ① 예비 창업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창업활동을 수행 중인 자

- 1. 창업관련 공모전/경진대회 등에서 수상한 자
- 2.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관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

②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창업활동을 하는 자

제7조(창업휴학 적용 제외 대상 업종)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창업휴학 허용 제외 대상 업종>

No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gambling 및 배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제8조(창업 휴학생 의무)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창업휴학 운영 절차에 따른 참여 신청 및 관련 서류(소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대학의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제9조(창업대체학점)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창업동아리)와 창업으로 구분되며, 일정조건 충족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1. 창업실습교과 : 교양선택학점으로 학기당 3학점 이하, 재학 중 6학점 이내에서 인정
2. 창업현장실습교과: 전공선택학점으로 학기당 3학점 이상, 재학 중 6학점 이내에서 인정
3. 창업현장실습과 현장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함. 단,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

제10조(창업동아리 인정 조건) ① (전임교원의 지도) 디아코니아인재개발센터에 등록·관리되는 창업동아리로서 대학의 전임교원(산학협력 중점교원 포함)이 지도 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8회 이상 지도한 경우 (2020.10.6.개정)

- ② (다수의 참여 학생) 최소 2명 이상 10명 이내의 학생이 참여 학생으로 등록한 경우
- ③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 및 평가) 사업계획서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과 평가 실시

제11조(신청자격) ① 창업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

- ② 창업현장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 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예비 창업자이며, 창업현장실습기간에 창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

제12조(수강신청) 창업실습교과 및 창업현장실습교과를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를 디아코니아인재개발센터에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2020.10.6.개정)

제13조(평가 및 학점인정) ①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이수 P(Pass), 미이수 F(Fail)로 평가한다.

- ② 창업실습 학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교과목 담당교수의 8회 이상 지도 (학생역량강화프로그램 입력 확인)
 2. 사업계획서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로 디아코니아인재개발센터가 인정한 결과물 (2020.10.6.개정)
 3. 창업동아리와 창업실습의 지도 실적은 중복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 ③ 창업현장실습 학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교과목 담당교수의 8회 이상 지도 (학생역량강화프로그램 입력 확인)
 2. 교과목 담당교수의 1회 이상 현장방문 평가 결과 보고서
 3. 수강 학생의 창업활동보고서
- ④ 창업현장실습 수강기간 내에 폐업시 수강학점은 미이수(NP)로 처리한다.
- ⑤ 창업 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학기말에 교학처에 제출해야하며, 교학처는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부여한다.

제14조(실습생 지도) 지도교수 또는 디아코니아인재개발센터는 학생창업기업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주고 이를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2020.10.6.개정)

제 5 장 창업학점 교류제

제15조(창업학점 교류의 정의) 창업학점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창업 강좌로 지정된 타 대학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함을 말한다.

제16조(창업 강좌) 창업 강좌란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로, 창업을 위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좌’를 말한다.

제17조(협약 사항) 창업 강좌 학점교류에 대한 협약은 별도로 시행한다. 단, 국내외 대학간 학점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타 규정과의 관계 등)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